

2025년 제4차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공고

「2025년 제4차 전자책 제작 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출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5년 전자책 제작 지원
- 사업목적: 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전자책 확충
- 사업내용: 전자책 제작비 지원 및 교육컨설팅 제공
- 사업기간: 2025.1.~12.

2. 지원 개요

- 지원대상: 출간 도서 및 미출간 원고를 전자책으로 제작·유통하려는 출판사
- 지원형식: EPUB 2.0
- 지원규모: 400종 내외(종당 50만 원)
 - ※ 선정 종수는 심사위원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사업 일정상 EPUB 3.0은 3회차까지 추진
- 지원내용

구분	내용
지원 사항	<p>① 전자책 제작비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작 완료 및 검수 통과 후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▶ EPUB 2.0: 종당 50만 원 정액 지원 <p>② 전자책 제작 컨설팅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EPUB 2.0 제작 관련 교육 자료 배포 및 컨설팅
지원 방법	<p>① 신청 도서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도서 선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※ 출판사 최대 신청 20종, 저자 중복 선정 20종 제한(회차별 공통 적용) <p>② 선정 도서 전자책 제작 및 유통 증빙자료 검토 후 출판사별 지원금 일괄 지급</p>
지원 조건 (필수)	<p>① 신청 도서(콘텐츠): 출간 도서(종이책) 및 미출간 원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출간 도서(종이책)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

구분	내용
	<p>“간행물”로서 종이책 ISBN(13자리)을 발급받은 것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“간행물”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, 발행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.</p> <p>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시행령 제3조(간행물의 기록 사항)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출판사 2. 「도서관법」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. 다만,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.</p> </div> <p>※ 국립중앙도서관 “ISBN·ISSN·납본시스템”에서 ISBN 발급 및 서지정보 정정은 신청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처리, 사업 접수 마감일을 고려하여 준비 요함</p> <p>- 미출간 원고: 완결성을 갖춘 출간 예정의 최종 원고(완고 기준)</p> <p>※ 종이책 ISBN을 미리 발급한 경우, 출간 예정이라 하더라도 출간 도서로 판단</p> <p>② 저작권 확보: 신청 도서가 모든 저작권자(글·그림·사진 저자, 역자 등)와의 계약에서 출간 및 전자출판 관련 권리나 저작권 설정이 명확해야 함</p> <p>③ 제작 기준 및 품질 준수: 진흥원 기준에 따른 품질 검수를 통과해야 함</p> <p>④ 제작 지원 문구 명기: 전자책 제작물 및 유통 화면에 지원 사실을 밝혀야 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 text-align: center;"> <p>이 콘텐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</p> </div> <p>※ 전자책 판권란 또는 반표제지에 지원 문구를 명기하지 않을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</p> <p>⑤ 제작물 유통: 제작 완료 및 품질 검수를 통과한 전자책을 유통해야 함 ※ 유통은 ‘판매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태’를 말하며, 유통하지 않을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</p> <p>⑥ 증빙서류 제출: 제작 증빙서류(제작 내역 공문, 전자세금계산서 등)와 유통·지원 문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</p> <p>⑦ 국립중앙도서관 납본: 제작 및 품질 검수를 완료한 후 전자책 ISBN을 발급받아 반드시 납본해야 함 ※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</p> <p>⑧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증: 권고사항이며, 사업 신청 시 ‘기증 의사’를 밝힌 전자책은 반드시 기증해야 함</p> <p>⑨ 보완 의무: 진흥원 검수 결과에 따라 제작물 및 서류를 보완·제작해야 하며, 제작 완료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</p>

3. 신청 및 선정 개요

구분	내용				
신청 방법	<p>① 전자책바로센터(barokpipa.or.kr) 로그인 ▶ '전자책 제작' 온라인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전자책바로센터('24년 개편) 가입 필수, 허위 번호 가입 및 중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출판사당 1개의 계정만 생성 가능 ※ 신청 내용 확인 방법: 로그인 ▶ 화면 오른쪽 위 '마이페이지' ▶ '신청현황' 클릭 ※ 출판유통통합전산망(bnk.kpipa.or.kr) 가입 필수, 종이책 메타데이터 등록 권고 ※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 종이책 메타데이터 등록 후 사업 신청 시, ISBN을 통한 신청도서 정보 자동 불러오기 가능 				
신청 기간	2025. 8. 11.(월)~8. 19.(화) 16시까지 [9일간]				
사업 신청 제출 서류 (필수)	<p>① 확인서: 신청 도서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진흥원 제공 양식 사용, 양식 내 작성 방법 숙지 후 작성 필수 ※ 하기 표와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도서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※ '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핵심 조항 준수확인서' 미허용 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내서</td> <td>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, 그림작가, 사진작가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대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: 저작권자(저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국내서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, 그림작가, 사진작가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대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: 저작권자(저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
	구분	내용			
	국내서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, 그림작가, 사진작가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대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: 저작권자(저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서 (번역서)</td> <td>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서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원저자, 그림작가, 사진작가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역자, 역주, 역해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대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: 저작권자(역자, 역주, 역해 등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외서 (번역서)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서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원저자, 그림작가, 사진작가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역자, 역주, 역해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대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: 저작권자(역자, 역주, 역해 등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			
외서 (번역서)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서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원저자, 그림작가, 사진작가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역자, 역주, 역해 등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대체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: 저작권자(역자, 역주, 역해 등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(국내서·외서)</td> <td>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(망인)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(국내서·외서)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(망인)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			
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 (국내서·외서)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(망인)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				

구분	내용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참고 (저작권법 일부 발췌)</td> <td> <p>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계약 기간 만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저작권자란에 망인명, 상속자명 기입 *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개인정보 블러 처리) ▪ 계약 기간 미만료 :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 <p>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<p>제44조(보호기간의 기산)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가산한다.</p> <p>제53조(저작권의 등록)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작자의 실명·이명(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)·국적·주소 또는 거소 2. 저작물의 제호·종류·창작연월일 3.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·공표연월일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<p>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.</p> </td> </tr> </table> <p>② 심사 원고: 신청 도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원고(본문) 파일 일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DF로 제출, '앞표지 + 목차 + 신청도서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'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하여 제출 * 온라인 서점(유통사)의 '미리보기' 제공 형태에 준함(이외 형태 및 양식 미허용) ※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 이내에서 신청 도서의 핵심 내용을 출판사 자율로 발췌, 발췌 위치(본문 앞·중·뒤)에 대한 제한은 없음(단, 요약본, 축약본 불가) ※ 앞표지, 목차는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에 포함되지 않음 ※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 초과 제출 시, 초과분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- 앞표지, 목차 필수 제출, 미포함 시 심사에서 제외함 ※ 미출간 원고의 경우 앞표지 생략 가능, 그림책의 경우 목차 생략 가능 	참고 (저작권법 일부 발췌)	<p>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계약 기간 만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저작권자란에 망인명, 상속자명 기입 *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개인정보 블러 처리) ▪ 계약 기간 미만료 :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		<p>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<p>제44조(보호기간의 기산)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가산한다.</p> <p>제53조(저작권의 등록)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작자의 실명·이명(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)·국적·주소 또는 거소 2. 저작물의 제호·종류·창작연월일 3.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·공표연월일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<p>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.</p>
참고 (저작권법 일부 발췌)	<p>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계약 기간 만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저작권자란에 망인명, 상속자명 기입 *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개인정보 블러 처리) ▪ 계약 기간 미만료 :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				
	<p>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<p>제44조(보호기간의 기산)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가산한다.</p> <p>제53조(저작권의 등록)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작자의 실명·이명(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)·국적·주소 또는 거소 2. 저작물의 제호·종류·창작연월일 3.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·공표연월일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<p>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.</p>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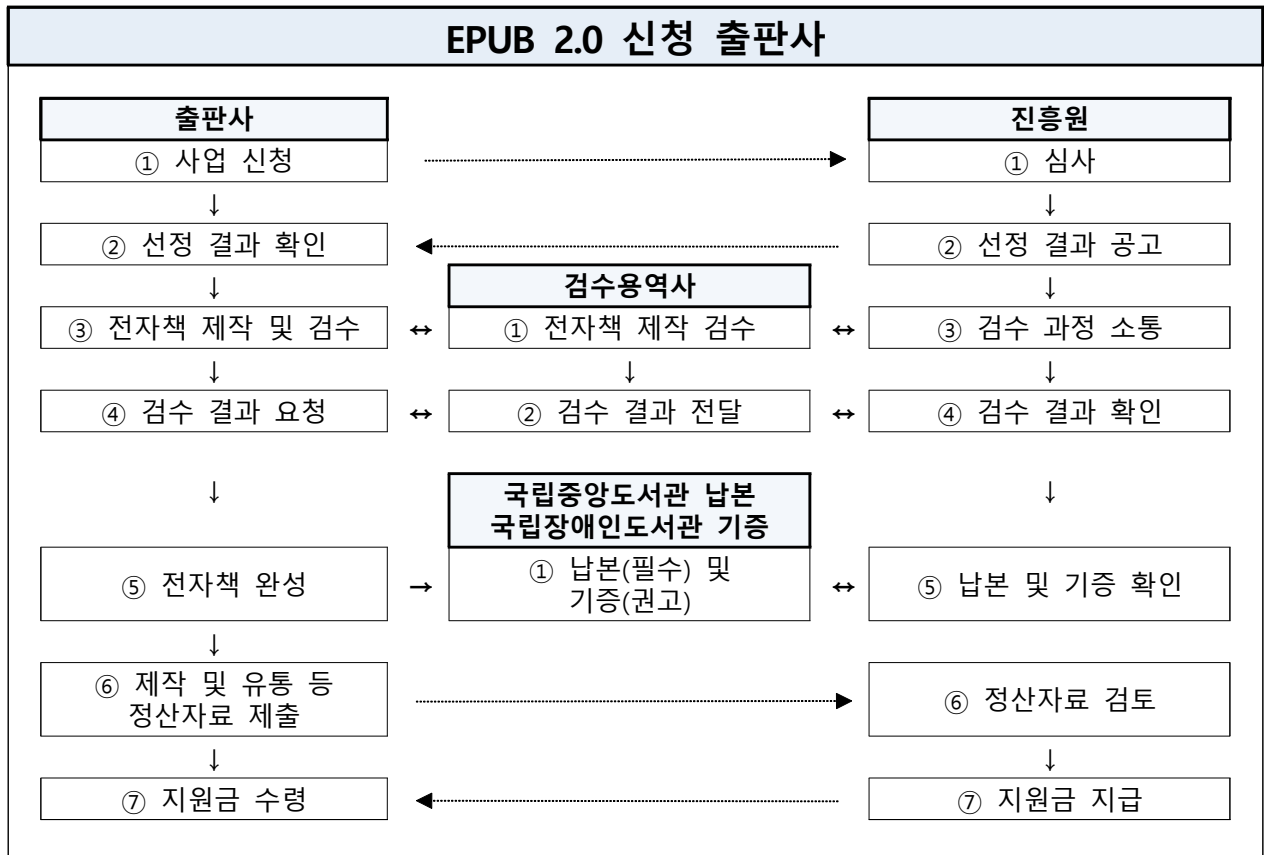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							
제작 완료 제출 서류 (필수)	① 제작 증빙서류: 선정 도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였다는 증빙서류 - 전자책 제작 내역 공문(진흥원 양식 사용) - 제작사 전자세금계산서: '외주 제작'의 경우만 해당, '자체 제작'의 경우 미제출 ② 유통 증빙 자료: 전자책 제작물을 유통한 유통 사이트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※ 선정 후 안내 매뉴얼 내 방법 숙지 후 제출 ③ 지원 문구 증빙 자료: 제작 지원 문구 명기 사실을 증빙하는 전자책 판권란 또는 반표제지 이미지 ※ 선정 후 안내 매뉴얼 내 방법 숙지 후 제출 ④ 통장 사본: 출판사 또는 출판사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								
심사 방법	① 심사위원회 구성: 전문 심사위원으로 6명 내외 구성(연 4회, 회차별 2회 개최) ※ 심사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상·하반기 2회차씩 동일한 심사위원으로 구성 ② 심사 방법: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서 및 심사 원고로 신청 도서(콘텐츠) 평가 ③ 심사 기준(안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3 898 1399 1173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획성 (40)</td> <td>· 디지털 변환 형식의 적절성 · 전자책 독자 접근 편의성</td> </tr> <tr> <td>우수성 (60)</td> <td>· 보존하고 널리 누릴만한 도서 · 도서의 주제성, 독창성, 접근성</td> </tr> <tr> <td>가산점 (2)</td> <td>· 신간 도서(공고일 기준 3개월 내 출간 도서), 동시 출간 예정 도서 및 미출간 원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기획성 (40)	· 디지털 변환 형식의 적절성 · 전자책 독자 접근 편의성	우수성 (60)	· 보존하고 널리 누릴만한 도서 · 도서의 주제성, 독창성, 접근성	가산점 (2)	· 신간 도서(공고일 기준 3개월 내 출간 도서), 동시 출간 예정 도서 및 미출간 원고
구분	내용								
기획성 (40)	· 디지털 변환 형식의 적절성 · 전자책 독자 접근 편의성								
우수성 (60)	· 보존하고 널리 누릴만한 도서 · 도서의 주제성, 독창성, 접근성								
가산점 (2)	· 신간 도서(공고일 기준 3개월 내 출간 도서), 동시 출간 예정 도서 및 미출간 원고								
심사 및 선정 제외	① 신청 도서가 본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거나, 선정 결과 공고일 이전에 이미 전자책이 유통 중인 도서(콘텐츠) ※ 오디오북 외 모든 파일 형식의 전자책(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포함) ② 공고 및 접수 마감일 기준 '출판유통통합전산망(bnk.kpipa.or.kr)'에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출판사의 도서(콘텐츠) ※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, 출판물의 생산·유통·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화함으로써 분산돼 있는 출판유통정보를 통합관리합니다.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메타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면 연계기관 및 모든 서점의 시스템에 신속하게 전달됩니다. ③ 저작권자와의 출판 및 전자출판에 대한 저작권·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도서(콘텐츠) ④ 제출 서류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, 제출 서류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입, 오기입,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⑤ 미완결 콘텐츠, 단일 콘텐츠로서 완결성이 없는 시리즈 중 일부 콘텐츠, 단행본의 일부 챕터 또는 요약본 ⑥ 학습 교재류, 정기간행물, 학회지 등 ⑦ 제작 완료 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								

3. 추진 일정(안)

사업 추진 내용	4차
모집 공고	8.4.(월)~8.19.(화), 16일
신청서 접수	8.11.(월)~8.19.(화), 9일
심사위원회 개최	8.28.(목)~9.10.(수)
선정 결과 발표	9.23.(화)
전자책 제작, 검수 및 컨설팅	9.23.(화)~11.24.(월)
전자책 납본, 유통, 증빙자료 제출 완료	11.24.(월)
제작비 지급	12월 중

※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4. 지원 절차



5. 유의 사항

- 본 사업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사업공고 및 안내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사에 있습니다.

※ 제출 서류, 기입 정보, 날인 또는 서명 등 명확히 확인 필요

- 사업 신청에 앞서 ‘전자책바로센터’ 및 ‘출판유통통합전산망’의 가입은 필수입니다.
- 전자책바로센터에 제출 완료된 신청서 및 자료는 회수가 불가능하며, 제출을 완료하면 지원 이력 삭제는 불가능합니다.
- 신청 도서는 저작권자(저자, 역자, 그림작가 등)와 출판권설정계약,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또는 공중송신권 체결 등, 저작권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내 서명은 자필 서명, 도장, 전자 서명(서명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등이 확인되어야 함), 전자 도장만 허용합니다.
 - ※ 한글(hwp), PDF 등 문서 파일 내 글꼴, 그리기 개체 등으로 서명 시 미제출로 간주
- 선정 도서의 전자책 제작 형태(EPUB 2.0)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지원금은 선정된 모든 출판사가 제작·납본·유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 완료 후, 진흥원의 검수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지급됩니다.
- 선정 취소 및 선정 후 사업 수행 불가 도서는 다음 차시 및 차년도 본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.
 - 상기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 - 상기 심사 및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표절 및 복제 등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
 - 기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될 경우

6. 문의

- 미래산업팀(063-219-2759, ebookbaro7@kpipa.or.kr)

2025. 8. 4.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(직무대행)